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6 . 12 .

의안 번호	426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주차장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 세분화함(안 제3조 제1항, 별표 1)
- 나.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행위 제한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 보완함(안 제3조 제2항)
-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차량을 종전에는 장애인수첩소지 자가운전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한하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경승용차 등으로 확대함(안 제4조)
- 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안 제12조, 별표10)
-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종전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함(안 제13조)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의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 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

4. 경승용차(8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 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1]을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가감 기준 (제17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 반 정 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공용을 개시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위반상태의 10일 미만	250	200
		위반상태의 10일 이상 30일 미만		250
		위반상태의 30일 초과		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 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 제2항	1회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 미만	100	80
		2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 이상		100
		3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 미만		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법 제16조 제1항	위반상태 적발시	50	40
		1차 시정명령 위반시		50
		2차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	법 제15조	1차 위반시	50	40
		2차 위반시		50
		3차 이상 위반시		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위반상태 적발시	50	40
		1차 시정명령 위반시		50
		2차 이상 위반시		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위반 한 때	법 제15조	위반상태 적발시	50	40
		1차 시정명령 위반시		50
		2차 이상 위반시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15조	위 반 시	50	40
		2차 이상 위반시		60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노 상 주 차 장				
구 분	1시간 까지			1시간초과
	1 구획 최초30분	1 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 구획 30분 마다
1 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2 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노 외 주 차 장								
구 분	1시간 까지			1시간초과	1 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1 구획 최초30분	1 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 구획 30분마다		주 간	야 간	상 시
1 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 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2,5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고성읍, 회화면 배둔리
 - 나. 2급지 : 면 지역(회화면 배둔리 제외)
4.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2:00(14시간)
 - 11월 ~ 3월 ; 09:00 ~ 21:00(12시간)

[별표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5 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5대
	예식장	시설면적 50㎡당 1.5대
	기타	시설면적 100㎡당 1.2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80㎡ 당 1.5대
	기타	시설면적 100㎡당 1.2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 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 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 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2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세대당 0.7대, 60㎡ 초과 85㎡이하의 1대, 85㎡초과의 경우는 85㎡ 초과 당 1.2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 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 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는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별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구역 및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고 주차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별표1의 1과 같이하하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 밀집시간인 오전9시부터 오전11시까지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터를 가산한다. 4. 주차요금 미납자의 경우 :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의1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신설)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③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경감) ①장애복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 소지자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②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퍼센트 경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영 제6조제1항 규정의 "별표 1"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군수가 시행한 개발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7조제1항 규정의 주차규모 이하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p>	<p>4. 경승용차(8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10과 같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 리를 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별표 1의 1)</p> <p>(별표 8)</p> <p style="text-align: center;">과징금 가감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별표 8)</p> <p style="text-align: center;">과징금 가감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참조"</p> <p>(별표 1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시설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참조"</p>